등록번호	시장경제과-37795
등록일자	2015.9.4.
결재일자	2015.9.7.
공개구분	대시민공개

경제진흥팀장	시장경제과장	기획재정국장	부구청장	구청장	
김송희	이재호	박진석	황치영	09/07 최창식	
협 조					

- 을지로 조명축제 성공을 위한 -

서울시 중구•(재)서울디자인재단 업무협약 체결

기획재정국

시장경제과

- 을지로 조명축제 성공을 위한 -

서울시 중구 · (재)서울디자인재단 업무협약 체결

을지로 도심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술 트렌드의 융합과 디자인적 발전 가능성이 높은 조명산업의 마케팅 및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조명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자 양 기관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함

Ⅰ 추진 근거

- 을지로 도심산업 특화발전 계획(구청장 방침, 2014. 8. 16)
- 서울시 을지로 도심산업 활성화 기본계획(경제진흥실, 2014.11)

Ⅱ 협약 개요

- 대　　상 :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(대표이사 이 근)
- 기　　간 : 협약서 서명일로부터 ~ 2015. 11. 30.
- 협약방법 : 양 기관 협약서 직인날인
- 업무협약 내용

서울디자인재단	중 구 청
- 전체 행사 기획, 프로젝트 아이덴티티 디자인 및 감리 - 조명작품의 제작, 연출, 설치, 관리, 철거 - 조명작품을 활용한 이벤트 (세미나 등) 기획 실행 - 조명축제 홍보 기획 및 실행	- 전체 행사의 운영 관련 총괄 (관람객 안내, 동선관리, 인력, 안전, 비상사태, 물자, 경비 등) - 점등식 연출 및 운영총괄 (초청 및 의전 포함) - 공가 디자이너 참가지원 및 투어 이벤트 - 옥외 홍보 등

- 소요예산 : 490,000천원
  - 서울디자인재단 : 400,000천원
  - 우리구 : 90,000천원

Ⅲ (재)서울디자인재단 현황

- 대표이사 : 이　근
- 설 립 일 : 2008. 12. 16.
- 소 재 지 :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283
- 주요업무 : 디자인을 통한 서울시민의 삶의 질 개선
  - ▸ 시민서비스 디자인 (성수동 수제화 거리, 을지로 조명축제 등)
  - ▸ DDP 운영사업, 디자인산업 진흥

Ⅳ 행사 계획

- 행사일시 : 2015. 11. 4 ~ 11. 10. (예정)
- 장　　소 : 청계 · 대림상가, 조명거리, 청계천 일대
- 행사 주요내용
  - ▸ 조명디자이너와 조명상가 연합체의 콜라보를 통한 조명작품 전시
  - ▸ 조명관련학과 대학생과 조명 디자이너들의 팀워크 프로그램 진행
  - ▸ 조명활용 다양한 이벤트, 각종 퍼포먼스, 먹거리 장터 등 부대행사
  - ▸ 한국조명협회 주관 을지로 조명산업 발전을 위한 세미나 개최
  - ▸ 을지로 디자인/예술 프로젝트 입주 예술가들의 이벤트 참여 등

Ⅴ 행 정 사 항

- 서울디자인재단에 협약내용 통보
- 조명축제 개최시까지 정기적으로 업무 협의

붙임 : 협약서 1부.　끝.

- 도심창조산업 디자인 프로젝트 -

을지로 조명축제 성공을 위한 업무 협약서

서울특별시 중구와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은 「도심창조산업 디자인 프로젝트-을지로 조명축제(가칭, 이하 을지로 조명 프로젝트)」의 성공을 위하여 신의와 성실로 상호 협조하며 다음과 같이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 (목적) 본 업무협약은 상호 기관 간의 전략적인 업무제휴를 통하여 '을지로 조명 프로젝트'의 성공을 위해 상호협력관계를 갖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협력 업무) 양 기관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'을지로 조명축제' 업무를 분장한다.

1. 서울디자인재단
   - 전체 행사 기획, 프로젝트 아이덴티티 디자인 및 감리
   - 조명작품의 제작, 연출, 설치, 관리, 철거
   - 조명작품을 활용한 이벤트(세미나 등) 기획 실행
   - 조명축제 홍보 기획 및 실행
2. 중구청
   - 전체 행사의 운영 관련 총괄
     (관람객 안내, 동선관리, 인력, 안전, 비상사태, 물자, 경비 등)
   - 점등식 연출 및 운영총괄(초청 및 의전 포함)
   - 공가 디자이너 참가지원 및 투어 이벤트
   - 옥외 홍보 등

※ 1. 주요사안의 업무공유와 결정을 위해 매주 정기회의를 개최한다.
2. 행사 진행 중 분장이 명확하지 않은 업무는 상호협의하여 정한다.

제3조 (협력) 양 기관은 본 협약과 관련, 상기 협력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긴밀한 협조 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.

제4조 (비용부담) 제2조에 따라 수행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예산은 각 기관의 부담으로 하며 필요 시 협약체결 당사자 간 별도 합의하여 정한다.

제5조 (비밀의 준수) 양 기관은 상호 동의 없이, 본 협약과 관련한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되며, 비밀유지의 의무는 본 양해각서 효력 종료 후에도 유효하다. 이를 위반 시,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위반 당

사자가 부담한다.

제6조 (신의성실의 의무) 양 기관은 본 협약에서 정한 제반 사항을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한다.

제7조 (협약의 발표 및 유효기간) 본 협약은 양 기관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되며, 유효기간을 협약일로부터 2015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.

제8조 (해지) 본 협약을 중도에 해지코자 할 때에는 해지예정일 2개월 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 상대방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.

제9조 (보관) 본 업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해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, 상호 서명 또는 기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5년 9월 일

서울특별시 중구
구청장 최 창 식

서울디자인재단
Seoul Design Foundation

(재)서울디자인재단
대표이사 이 근